

# “헌재, 신속히 파면해야...이젠 민생 경제 집중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발부되자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일제히 사뭇기뻐하는 평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며 “(윤 대통령 구속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즉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신속한 수괴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새벽 헌정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이 구속됐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의 결말은 준엄한 법적 처벌과 헌법적 파면 뿐임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제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 여야 모두 하루라도 빨리 민생 추경부터 시작하라. 무너진 시민경제, 골목 상권부터 중대기업까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오월 공법 3단체(6·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 기념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과 국민을 유린한 윤석열 내란 수괴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이고 인과응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 수괴는 책임을

●尹구속·서부지법 습격광주·전남반응

姜시장 “사법부 내란세력 철퇴”...김지사 “결말은 파면 뿐”

오월단체 “헌법·국민 유린尹구속 당연한 결과 인과응보”

민주광주시당 “사법시스템 파괴자들 엄정한 조치 취해야”

통감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폭동을 주도하고 참여한 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원들도 성명서를 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의 몰락이자 사법기강”이라며 “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하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정의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원들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정의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원들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 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 청구 등 전망...수용 가능성 낮아

●尹막판 뒤집기나설까

석방뿐만 아니라 수사 지연·지지층 결집 효과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동원 절차 불복 양상

‘내란 아니고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주장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구속적부심사 통해 다시 한번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에 부처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된 날부터 피의자는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인 전망이 나온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

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온다.

이와 별개로 다른 선택지가 고려될 수도 있다.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

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문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거나 향후 구속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냐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 역시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이 부당함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거둬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근경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구속기소돼 이미 확보된 증거가 상당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헌정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부당한 구속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제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한 차례 불발됐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12·3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 수사 상황

<b>윤석열 대통령</b> 2025년 1월 19일 구속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b>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b> 2024년 12월 27일 구속기소 내란 중요인물 중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b>박인수 육군참모총장</b> 1월 3일 구속기소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b>이인형 국군방첩사령관</b> 12월 31일 구속기소 정치인 체포조 명단 작성 편성 지시, 국외·선관위에 병력 투입	<b>곽중근 특수전사령관</b> 1월 3일 구속기소 국외에 병력 투입	<b>조지호 경찰청장</b> 1월 8일 구속기소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전 언론과 회동
<b>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b> 12월 31일 구속기소 국외에 병력 투입	<b>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b> 1월 6일 구속기소 계엄 사전 모의, 선관위 병력 투입	<b>노상원 전 정보사령관</b> 1월 10일 구속기소 계엄 사전 모의	<b>김용근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b> 1월 15일 구속기소 계엄 사전 모의	<b>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b> 1월 8일 구속기소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전 언론과 회동	

## 비상계엄 수사 '정점'尹 포함 11명 구속

내란 초尹기소...추가 의혹 수사에 내란 특검법 시행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인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사람은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이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곽중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

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중사한 혐의(내란 공수임무 중사)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된다.

다만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는지 등에 관한 수사가 남아있다.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도 확인할 부분으로 꼽힌다.

민약 내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공수처 등의 향후 수사 일정이 영향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앞 경찰 경계근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한 19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기소,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8월께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사형·무기...감경시 유기징역 가능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

양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원도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인물 중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정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

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재판부에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을 위해 한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인원이 기소될 경우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재판 심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눌 수도 있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연합뉴스

##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터무니없는 구속”

尹변호인단 ‘시일야방성대곡’ 입장문...“구속사유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晝夜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0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

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 그 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